

#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은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8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4.

발 의 자 : 김은혜 · 조배숙 · 서천호  
김재섭 · 이종배 · 안철수  
이종욱 · 신동욱 · 박정하  
나경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,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(수원지방법원, 의정부지방법원)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, 성남시에는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서 성남시,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서울행정학회가 2025. 1. 작성한 ‘합리적인 법원 신설·통폐합 기준 등 연구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,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(1,640,985명, 평균의 2.56배)를 가지고 있으며,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4,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.61배에 달한다는 것임.

이와 같은 관할인구수 및 연간 본안사건수, 또한 경기 동남권의 법원 접근성 및 서울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상황 등을 고

려할 때,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원고등법원 산하에 기존의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시, 광주시, 하남시 등 경기 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성남시,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, 경기동남부권 주민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(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, 별표 5 및 별표 7).

###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수원회생법원란 다음에 성남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	성남지방법원		성남시	
--	--------	--	-----	--

별표 1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다음에 성남지방법원 여주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	성남지방법원 여주지원		여주시	
--	-------------	--	-----	--

별표 1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란,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란,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란 및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란을 삭제한다.

별표 2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원		용인	용인시
		오산	오산시
	평택	안성	안성시
	안산	광명	광명시

별표 2의 수원지방법원란 다음에 성남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성 남		광 주	광 주 시
	여 주	양 평	양 평 읍
	여 주	이 천	이 천 시

별표 3 중 수원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 원	수 원		수원시 · 오산시 · 용인시 · 화성시
		평 택	평택시 · 안성시
		안 산	안산시 · 광명시 · 시흥시
		안 양	안양시 · 과천시 · 의왕시 · 군포시
	성 남		성남시 · 하남시 · 광주시. 다만 소년보호사건 은 앞의 시 외에 이천시 · 여주시 · 양평군
		여 주	이천시 · 여주시 · 양평군

별표 5 중 수원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 원	수 원		수원시 · 오산시 · 용인시 · 화성시. 다만, 소년 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평택시 · 안산시 · 광 명시 · 시흥시 · 안성시 · 안양시 · 과천시 · 의왕 시 · 군포시
		평 택	평택시 · 안성시
		안 산	안산시 · 광명시 · 시흥시
		안 양	안양시 · 과천시 · 의왕시 · 군포시

별표 7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 원		용 인	경 기 도	용인시
		오 산	경 기 도	오산시·화성시
	평 택	안 성	경 기 도	안성시
	안 산	광 명	경 기 도	광명시

별표 7의 수원지방법원란 다음에 성남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성 남		광 주	경 기 도	하남시·광주시
	여 주	양 평	경 기 도	양평군
	여 주	이 천	경 기 도	이천시

법률 제214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별표 7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 원		용 인	경 기 도	용인시
		오 산	경 기 도	오산시
		화 성	경 기 도	화성시
	평 택	안 성	경 기 도	안성시
	안 산	광 명	경 기 도	광명시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214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3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) ① 2028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,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,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,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,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,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성남지방법원, 성남지방법원 여주지원, 성남지방법원, 성남지방법원 여주지원, 성남지방법원 광주시법원, 성남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및 성남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성남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또는 수원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